

동아대학교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산학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상호 포괄적·호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동아대학교(이하 “동아대”라고 함)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의 인적 및 지적 자원 교류를 위한 산학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 범위) “동아대”와 “공사” 상호간 업무협력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세부 실행방안이나 추가할 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1. 교육프로그램 교류 협력
2.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3. 전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 업무

제3조(양해각서의 기간)

- ① 본 양해각서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진행의 내용은 “동아대”와 “공사”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선관의무 및 비밀유지)

- ① “동아대”와 “공사”는 양해각서의 존속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동아대”와 “공사”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해당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 일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상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아대학교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7년 10월 26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한석정

한석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 장 김선덕

김선덕